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김재홍 의원 외 6인

##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          |    |
|----------|----|
| 의안<br>번호 | 68 |
|----------|----|

제출년월일 : 2003. 11. 7.  
제출자 : 김재홍 의원 외 6인

### 1. 제안이유

- 결산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게 하여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연계시킴으로써, 결산의 기본 목적인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심사·분석한 결과를 차기 예산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햄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기간을 주고, 아울러 사전에 답변서를 받아 답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결산심사 방식 변경(안 제65조)

- 기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의결
- 변경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의결

#### 나. 시정질문요지서 송부기한 연장(안 제66조)

-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 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로 신설함(안 제66조)

### 3. 개정규칙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 타 시·군 비교표(결산심사) 및 관련법령(발췌) 1부 : 덧붙임

##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제4항 본문 중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5조(결산의 심사) <u>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u> 다만, 예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다.</p>  | <p>제65조(결산의 심사) ① <u>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u><br/>         ② <u>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다.</u><br/>         ③ <u>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u></p> |
| <p>제66조(시장 등의 출석요구)<br/>         ① ~ ③ &lt;생략&gt;<br/>         ④ <u>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별지 제16호 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u></p> | <p>제66조(시장 등의 출석요구)<br/>         ① ~ ③ &lt;현행과 같음&gt;<br/>         ④ <u>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별지 제16호 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

## 참 고 자 료

### 타 시·군 비교표(결산심사)

| 시·군 | 결산심사<br>상임위원회<br>회부여부 | 시정질문           |             | 비고 |
|-----|-----------------------|----------------|-------------|----|
|     |                       | 질문요지서<br>송부기한  | 답변서<br>제출기한 |    |
| 도회부 |                       | 질문시간<br>24시간 전 | 없음          |    |
| 포항시 | "                     | 질문시간<br>48시간 전 | "           |    |
| 경주시 | "                     | 질문시간<br>24시간 전 | "           |    |
| 김천시 | "                     | "              | "           |    |
| 안동시 | "                     | "              | "           |    |
| 구미시 | "                     | "              | "           |    |
| 영주시 | 미회부                   | "              | "           |    |
| 영천시 | 회부                    | "              | "           |    |
| 상주시 | "                     | "              | "           |    |
| 문경시 | "                     | "              | "           |    |
| 경산시 | "                     | "              | "           |    |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결산의 심사)

-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시정질문)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